

2005. 9. 15(목)  
제116회임시회제3차본회의

제 천 시 친 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제 천 시 친 환 경 농 업 육 성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 9. 2.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 9. 5.  
다. 상 정 일 자 : 2005. 9. 12.(제116회임시회산업건설위제3차회의)

### 2.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자 :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 가. 제 안 이 유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등에 의거,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바탕을 둔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임.

#### 나. 주 요 내 용

-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기능 -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의 7개사항 심의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수당 등 (제5조 ~ 제10조)
-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제10조)
-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보급과 토양의 보전(제11조, 제12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제16조)
- 친환경농업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제17조)
- 친환경농업 사업 평가(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 法的檢討 >

-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7조 등에서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도 계획에 의거 자체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으며,
-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3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 行政的檢討 >

-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증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친환경 농업정책 실시와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의한 우리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며, 좀더 일찍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2001~2005까지 5개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개년 실천 계획이 끝나고, 2006년 이후의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친환경 농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구를 조성하여 마을 단위로 다수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집단화시킴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농업 체험 마을로 육성하여, 도 농 교류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그동안(2001~2005)추진해온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 계획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자료로 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수립, 과제발굴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0조(품질보증)제2항 자체 품질 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 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바, 자체 품질 보증 제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 육성 사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농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인 만큼 대상자 선정, 생산기술의 보급, 특히, 보조금지원 체계의 확립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사과작목의 계획은 어떤지?(박종유의원)
-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토양보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박종유의원)
- 우리시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업에 품목하고 유통실적은 어떤지? 참여농가는 몇 가구인지?(최창규의원)
- 조례안 제10조에 품질보증은 시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나. 답변요지

#### <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

- 사과는 FTA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까지 319억 33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과원갱신, 친환경과수 체제확립 등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으며 ITM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있으며, 그 외에 또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은 토양관리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전체적으로 농경지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는 없음.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까지 총100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했고 내년에는 400ha까지 확대할 계획임.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자체 판매 또는 쌀 브랜드 사업장이 있음. 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사업장을 통해서 판매가 됐고 고추는 개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음.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쌀이 108호, 고추 무농약 재배가 24호, 잡곡재배단지 조성에 30호, 친환경 산채 무농약 재배단지가 9호가 참여를 함.
- 자체 품질 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작목이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배기준은 일부 품목만 되어 있음.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작목에 재배이력시스템을 도입해서 시 자체에서 품질인증해 줄 수 있는 농산물은 제천시장이 인증하겠다는 것임.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 7. 심 사 내 용

“ 없 음 ”

## 8.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1부. 끝.